

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롯데건설인의 魂(혼)을 담자

롯데건설(주)

우.0651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4-1 롯데캐슬 모텔하우스
☎ (031-482-5933) FAX 031-482-9450 담당자: 임혜정

문서번호 : 임의2016-35

2016년 03월 03일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 배정요청의 건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8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 1,005세대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자 배정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사업개요

- 위 치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86번지 일원
- 세대수 : 총 1,005세대
일반분양 224 中 기관추천 특별공급 19세대
- 견본주택 오픈일 : 2016년 3월 4일 예정
- 특별공급 신청일 : 2016년 3월 8일 예정

2. 업무협조사항

-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일 : 2016년 3월 7일 (특별공급 접수 전일)
- 대상자 배정 회신처
1) 전자우편 : parkjongdae@lottenc.com

첨 부 :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. 끝.

롯데건설주식회사
안산고잔연립사업소
사업소장 박종대



수신처참조: 경기도청(장애인복지과), 서울시청(장애인자립지원과), 인천시청(장애인복지과), 수원보훈지청(복지과),
경기지방중소기업청(공공판로지원과)

1. 대상
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.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중소기업 근로자 등)
- ※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인 세대주 및 세대원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·비속인 세대원 포함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.
- ※ 국가유공자, 장애인을 제외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(청약예금, 청약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, 면적별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.

2. 공급안내

- 사업지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86번지 일원
- 공급 세대수 :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- 일반공급 224세대중 85㎡이하 주택 건설량의 10%범위 이내인 19세대

구분	49A	49B	75	84A	84B	계
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	4	3	1	8	3	19

※ 타입별 세대수 배정은 각 주택형별 건설량의 비율로 배분

3. 공급일정

- 접수 - 2016. 03. 08 (화), 10:00 ~ 15:00 / 추첨 및 당첨자발표 - 2016. 03. 08 (화), 16:00
- 장소 :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 견본주택
- ※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4. 당첨자 선정 방법

-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, 해당 기관이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이 가능함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하여야 함.
-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
 - ① 당해지역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
- 추첨시 주택형별 추첨순서는 49A, 49B, 75, 84A, 84B 순으로 실시.
- 당사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, 동·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. (동·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)

5. 기타 유의사항

-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가능하며, 동일 세대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.
-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(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, 제55조 제1호, 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-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,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,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.
-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.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
-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.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이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.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처리함.(1회 특별공급 간주)
- 기타 본 안내문에 표시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바람.